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 행 | 개 정 안 |
|---|--|--|
| 제8조(청문) ①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과태료 부과 또는 명령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영 제39조의 청문절차규정에 따른다. | 제8조(의견진술)①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삭 제〉 하고자 하는 때에는 <u>미리 10일 이상</u> 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부과 〈삭제〉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u>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u>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 | ②삭제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8. 12. 24.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1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8년 11월 23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61회 정기회 제14차 사회건설위원회('98. 12.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가.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98. 5.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동 조례개정준칙(안)의 내용과 동일하게 하고 '98. 10.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기구설치조례 공포에 따른 변경사항을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토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개정(안 제3조)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조)
-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 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하여 업무혼선 방지(안 제5조)
- 기금의 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조문 신설(안 제7조 내지 제9조)

- 구청장이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안 제10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제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내용이 자연재해대책법과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동조례를 개정하여 운용관리 및 내용을 동일케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이고, 또한 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준칙에 따라 재해발생시 긴급을 요할 때 지체할 수 없는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된 것이며 기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30 |
|----------|----|

제출년월일 : 1998. 11. 20.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사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98. 5.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동 조례개정준칙(안)의 내용과 동일하게 하고 '98. 10.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공포에 따른 변경사항을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①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토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개정(안 제3조)
- ②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조)
- ③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하여 업무혼선 방지(안 제5조)
- ④ 기금의 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조문신설(안 제7조 내지 제9조)
- ⑤ 구청장이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 개정조례 표준(안) 통보 : 서울시 치수 13930-844('98. 5. 29)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의사항 :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은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영등포구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사업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건설교통국장
2. 기금출납원 : 치수과장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영등포구소속 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치수와 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 년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 현 | 행 | 개 | 정 | 안 | | | |
|---|--|--|--|--|---|--|--|
| <p>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u>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식 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위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u></p> | <p>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u>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u> ②<u>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영등포구 지정금고에 위탁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u></p> | <p>제4조(기금의 용도) <u>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u></p> |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 6.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비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영등포구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사업 | <p>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u>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u></p> | <p>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u>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u></p> | <p>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운용관 : 건설국장 2. 기금출납원 : 하수계장 <p>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p> | <p>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운용관 : 건설교통국장 2. 기금출납원 : 치수과장 <p>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p> |

| 현행 | 개정안 |
|---|---|
| <p>제7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 <p>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p> <p>④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영등포구소속 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p> <p>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치수와 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된다.</p> <p>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p>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p> <p>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p>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